〈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60054 |
|--------------|---------------|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6년 1월 18일 |
|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년 12월 23일 |



『핵커피』

정 보 공 개 서

당사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0 .

㈜핵가족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 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 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 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27호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2-2038-8444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2-2038-8446

[가맹사업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주소 및 전화번호 상동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 연혁
- 3. 업종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정보
- 10. 광고 판촉 지출 내역
- 11. 가맹금 예치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3. 형(形)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2. 영업 중의 부담
-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3. 상품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 행사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 경영활동 자문
- 4. 신용 제공 등 내역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훈련의 주요내용
- 2. 교육 훈련의 최소 시간 및 비용
- 3. 교육 훈련의 주체
- 4. 교육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 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 | ㈜핵가족 | | 사용 | 용 브랜드 | 핵커피 외 5개 | |
|------------|---|------------------------------------------|-------|--------------|--------------|----------|--------------|
| 주 소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27호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 | | | | |
| 법인설립등기일 | Y | 업자등록일 | 대표자 | | 대표전화번호 | | 대표팩스번호 |
| 2016.8.11. | | 2016.8.11. | 양 동 모 | | 02-2038-8444 | | 02-2038-8446 |
| 법인등록번호 | | 110111-6147543 사업자등록번호 594-8 | | 594-87-00525 | | |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27호 | | | |
| | 야두ㅁ/ | 핵커피 | (천 | 호동, 대우한강베네시 | E) | |
| 대표이사 | 양동모/ ㈜핵가족 | 역기퍼 외 5개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양 동 모 | 02-2038-8444 | 02-2038-8446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주 소 | | | |
| | | 양동모/ 귀한탄한기업 갯벌의 조개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층 329호 | | | |
| | 야두ㅁ/ | |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 | | |
| 대표이사 | 중동도/ ㈜탄탄한기업 | | 대표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양 동 모 | 02-2038-8444 | 02-2038-8446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 주 소 | | |
| | | | 서울특별시 | l 강동구 올림픽로 (| 564, 327호 | |
| | 71013L/ | 생기교 | (천 | <u>호동, 대우한강베네시</u> | E) | |
| 사내이사 | 김미라/ ㈜핵가족 | I | 대 표 자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 양 동 모 | 02-2038-8444 | 02-2038-8446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 | 표지 | 주 소 | | | |
|------|-----------------|--------|-------|-----------------------------|--------------|----------------|--------------|
| | | | | 서울특팀 | 별시 | 강동구 올림픽로 6 | 64, 3층 329호 |
| | フロロコレ/ | | | | (천 | 호동, 대우한강베네 | 시티) |
| 사내이사 | 김미라/ ㈜탄탄한기업 | 갯벌으 | 조개 | 대 표 자 |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 | 양 동 모 | | 02-2038-8444 | 02-2038-8446 | |
| 관계 | 이름/상호 | 영업 | 표지 | 주 소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층 329호 | | | |
| | | | |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 | | |
| 계열 | | 갯벌의 조개 | 대 표 자 | | 대표전화번호 | 대표팩스번호 | |
| 회사 | | | | 양 동 모 | | 02-2038-8444 | 02-2038-8446 |
| | 법인등록반 | 호 | 1101 | 11-8491675 | J | 사업자등록번호 | 820-87-02873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을 인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인수 • 합병 여부 | 기업명 | 영업표지 | 인수 • 합병일 | 주소 | 대표자 |
|---------------------|--------|--------|--------------|--------------------------------------------|-------|
|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을 인도함 | ㈜탄탄한기업 | 갯벌의 조개 | 2023. 6. 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51, 209동 209호(거여동, e편한세상 | 양 동 모 |
| | | | | 송파 파크센트럴)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핵커피』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 구 분 | 내 용 | 추가 설명 |
|-----------|------------------------------|------------------------|
| 명 칭 | 핵커피 | 비 사이즈 귀리 저무저 |
| 상 호 | 핵커피 ○○점 | 빅 사이즈 커피 전문점 |
| | ② | 출원번호 : 제4120150051477호 |
| | ক্র্যাম MACK COFFEE | 등록번호 : 제4103661790000호 |
| 상 표 | ③ | 출원번호 : 제4120150047121호 |
| Э # | 희키피 | 등록번호 : 제4103589480000호 |
| | NUCLEAR > | 출원번호 : 제4120150027120호 |
| | ^{(OF) 2-2-2} 핵커피 | 등록번호 : 제4103463730000호 |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 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 2021년 | 3,973,589 | 2,310,013 | 1,663,575 | 8,138,573 | 1,172,353 | 856,948 |
| 2022년 | 3,967,077 | 1,437,127 | 2,529,950 | 8,864,499 | 900,314 | 966,374 |
| 2023년 | 6,921,608 | 3,399,133 | 3,522,475 | 11,598,673 | 1,190,861 | 1,252,524 |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여부 | 이 름 | 01 = | OL 콘 | 01 = | OI = | 현 직위 | 사업경력 | | |
|---------------|-----------------|------------|----------------------|------------------------|-------------|------|------|--|--|
| - 원인어구 | 5 H | 한 역위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야두ㅁ | 대표이사 | 2018.3.~현재 | [㈜ 핵가족] 대표이사 | 업무총괄 | | | | |
| 가맹사업 | ' 양 동 모 가맹사업 | | 2022.12.~현재 | [㈜ 탄탄한기업] 대표이사 | 업무총괄 | | | | |
| 관련임원 김 미 라 | 11110111 | 2018.7.~현재 | [㈜ 핵가족] 사내이사 | 견여지의 | | | | | |
| | 김 미 라 사내이사 | | 2022.12.~현재 | [㈜ 탄탄한기업] 이사 | 경영지원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임원 | 지의ᄉᄼᄖ | |
|---------------|----|-------|----------------|
| 시엄 | 상근 | 비상근 | 직원수 (명) |
| 2023년 12월 31일 | 2 | - | 23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 관계 | 이름/상호 | 구분 | 기간 | 사업내용 |
|-------------|-----------------|------|--------------|-----------------------------------|
| 기메보ㅂ | ᄷᆘᆉ | 가맹사업 | 2016 7 성제 | 핵스테이크 (등록번호 : 20160417) 라는 |
| │ 가맹본부 │ | ㈜핵가족 | 경영 | 2016.7.~현재 | 영업표지의 양식사업 경영 |
| 가맹본부 | <i>(</i> 太)がっしる | 가맹사업 | 가맹사업 개시예정 | 팔도소갈비 (등록번호 : 20180120)라는 |
| 기정군구 | ㈜핵가족 | 경영 | 737 i 71793 |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가맹본부 | ㈜핵가족 | 가맹사업 | 2020.1.1.~현재 | 핵밥 (등록번호 : 201200463)이라는 |
| 기정군구 | (파쐭기득 | 경영 | 2020.1.1.~연제 |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 가맹본부 | ㈜핵가족 | 가맹사업 | 2017 2 청끄 | 핵도그 (등록번호 : 20170219)라는 |
| 기정군구 | (파쐭기국 | 경영 | 2017.2.~현재 | 영업표지의 핫도그사업 경영 |
| 가맹본부 | ㈜핵가족 | 가맹사업 | 2019.5.~현재 | 핵떡 (등록번호 : 20171124)이라는 |
| 기정군구 | (파쐭기득 | 경영 | 2019.5.~ 연제 | 영업표지의 떡볶이사업 경영 |
| 특수관계인 | ㈜탄탄한기업 | 가맹사업 | 2023.4.~현재 | 갯벌의 조개 (등록번호 : 20190659)라는 |
| (계열회사) | me 한인기 i | 경영 | 2023.4.~ 연제 | 영업표지의 한식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내용 |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 출원 및 등록번호 | 등록권리인 | 등록만료일 | 이미지 |
|------|---------------------|----------------------|-------|------------|--------------------|
| | 출원 : 2015.10.28. | 출원 : 제4120150051477호 | | 2026.7.19. | <u>ज</u> ्ञानाम् |
| | 등록 : 2016.7.19. | 등록 : 제4103661790000호 | | 2020.7.19. | 파키피 HACK COFFEE |
| 상 표 | 출원 : 2015.10.5. | 출원 : 제4120150047121호 | 양동모 | 2026.1.26. | |
| ő # | 등록 : 2016.5.12. | 등록 : 제4103589480000호 | 0 5 X | 2020.1.20. | 핵키피 |
| | 출원 : 2015.6.9. | 출원 : 제4120150027120호 | | 2026 5 12 | NUCLEAR (SOFFEE |
| | 등록 : 2016.1.26. | 등록 : 제4103463730000호 | | 2026.5.12. | 핵 커피 |

• 당사는 상표 등록권리인인 양동모로부터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습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핵커피』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5년 8월 27일

2. 『핵커피』의 연혁

| 가맹본부 상호 | 영업표지 | 대표자의 이름 | 가맹사업 경영 기간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핵커피 | 핵커피 | 김 미 라 | 2015.8.~2018.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405호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
| ㈜핵가족 | 핵커피 | 양 동 모 | 2018.3.~2020.1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층 323, 324호(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
| ㈜핵가족 | 핵커피 | 양 동 모 | 2020.11.~현재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327호 (천호동, 대우한강베네시티) |

3. 『핵커피』의 업종

| 영업표지 | 업종 | | | |
|-------------|-----|-----------|--|--|
| 핵커피 | 대분류 | 소분류(주요상품) | | |
| 역기 <u>계</u> | 커피 | 커피 | |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핵커피』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 개)

| TICH | 2021.12.31. | | | 2022.12.31 | • | 2023.12.31. | | | |
|------|-------------|------|------|------------|------|-------------|-----|------|------|
| 지역 | 전 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 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전 체 | 가맹점수 | 직영점수 |
| 전체 | 1 | 1 | - | 1 | 1 | - | 1 | 1 | - |
| 서울 | 1 | 1 | - | 1 | 1 | - | 1 | 1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세종 | - | - | - |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 | - | - | - |

| 강원 | - | - | - | - | - | - | _ | _ | - |
|----|---|---|---|---|---|---|---|---|---|
| 충북 | - | - | - |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 | - | - |
| 전북 | - | - | - | - | - | - | - | - | - |
| 전남 | - | - | - |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 | - | - | - |
| 제주 | - | - | - | - | _ | _ | - | - | _ |

5. 최근 3년간『핵커피』가맹점 수

(단위:개)

| 연도 | 연초 | 신규개점 | 계약종료 | 계약해지 | 명의변경 | 연 말 |
|-------|----|------|------|------|------|-----|
| 2021년 | 1 | - | - | - | - | 1 |
| 2022년 | 1 | - | - | - | - | 1 |
| 2023년 | 1 | - | - | - | - | 1 |

6. 『핵커피』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핵커피』 외에도 가맹본부가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 과 같습니다.

| 구분 | OLE 사능 | анті | 정보공개서 | 업종 | 가맹점/직영점의 수 (단위 : 개) | | | |
|-----------------|--------|----------|----------|-----|----------------------------|-------------|-------------|--|
| 丁世 | 이름/상호 | 영업표지 | 등록번호 | 80 | 2021.12.31. | 2022.12.31. | 2023.12.31. | |
| | | 핵스테이크 | 20160417 | 양식 | 13/2 | 8/2 | 5/1 | |
| | 핵도그 | 20170219 | 피자 | 0/1 | - | - | | |
| 가맹본부 | ㈜핵가족 | 핵떡 | 20171124 | 떡볶이 | 25/1 | 19/1 | 17/0 | |
| | | 팔도소갈비 | 20180120 | 한식 | - | - | - | |
| | | 핵밥 | 20200463 | 한식 | 121/1 | 134/1 | 111/1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 ㈜탄탄한기업 | 갯벌의 조개 | 20190659 | 한식 | - | - | 8/0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전체 점포 수가 1곳이어서 특정 가맹점의 매출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2022년 가명 | 뱅점사업자의 | 의 연간 평균 | 매출액 (단위 | 위 : 천원, 부 | 가세 미포함) | |
|----|------------------|--------------|-------------|---------|----------------|-----------|-------------|-------|
| 지역 | 2022년 말 가맹점 수 | 연간 평균 | · 매출액 | | 평균 (상한) | | 평균 (하한) | 비고 |
| | 7166 T | 연간 평균 매출액 | 면적 3.3㎡당 | 상한 | 면적 3.3㎡당 | 하한 | 면적 3.3㎡당 | |
| 전체 | 1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서울 | 1 | 해당없음 | - | - | - | - | - | 5곳 미만 |
| 부산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대구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인천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광주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대전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울산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세종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경기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강원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충북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충남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전북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전남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경북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경남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 제주 | - | 해당없음 | - | - | - | - | -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 가맹점의 매출액 산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핵커피』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연도 | 영업중인 가맹점 수 | 평균 영업기간 |
|-------|------------|---------|
| 2023년 | 1 | 2,023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핵커피』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가 2023년에 『핵커피』 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지출한 광고·판촉 비용은 다음과 없습니다.

| 그ㅂ | 구 분 수 단 기 간 | | | 단위 : 천원, 부 | 비고 | |
|-----|------------------|----|-----|------------|-----|-----|
| T E | _ 구 ^교 | 기원 | 합 계 | 가맹본부 | 가맹점 | n T |
| 합 계 | - | - | - | - | - | - |
| 광 고 | - | - | - | - | - | - |
| 9 T | -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치기관 상호 | 담당부서 | 주 소 | 전화번호 |
|---------|-------|-----------------------|--------------|
| 국민은행 | 수신상품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4 | 02-2073-7114 |

귀하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기업서비스 클릭 ->가 맹금 예치제도 클릭 ->가맹점사업자 클릭 ->가맹금 예치를 클릭하여 당사 예치계좌에 최초 가맹금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원고 | 피고 | 사건번호 | 최종법원명 | 판결일자 | 청구취지 및 내용 | 판결 또는 화해내용 |
|---------|------|---------|----------|-------------|-----------------|---------------|
| 공정거래위원회 | ㈜핵가족 | 2019과6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10.14. | 과태료 500만원 부과 | 청구 취지와 동일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핵커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구 분 | 지급대상 | 예치 대상 여부 | 비고 |
|---------|---------------|----------|-------|
| 최초 가맹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계약이행보증금 | 가맹본부 | 예치 | 확정 금액 |
| 기타 비용 |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 예치하지 않음 | 추정 금액 |

1) 최초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 최초가맹금내역 | 금 액 | 포함내역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가맹비 | [5,500] | 가맹점 운영권 및 레시피 매뉴얼 부 여에 대한 대가 | 가맹계약 체결과 | 계약 체결 후 4개월 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 가맹점운영권 및 레시피 매뉴얼을 받기 위해 가맹 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 성 대가 |
| 개점 전 교육비 | [3,300] | 가맹점 운영에 관 한 교육비 | 동시 | 교육시작 1일 이 전에 계약이 종료 된 경우 |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 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 되면 반환되지 않음 |
| 합 계 | | | [3 | 8,800] | |

2) 계약이행보증금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가 계약 종료 후 절차 이행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 아래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당사에 대한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 ' 년 (단위 : 천원, 부가세 없음) 가입하다 귀책사유 | 구 분 | | 지급기한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으 | 비고 |
|----------------------------------------------|-----|--|------|-----------------|----|
|----------------------------------------------|-----|--|------|-----------------|----|

| 계약이행보증금 | [2,000] | 가맹계약 제결과 동시 | 물품대금이나 경영지도 비, 손해배상액 등 | 해지 및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금 액 (단위 : 천원) | 부가세 |
|---------------|----------------------|-----|
| 최 초 가 맹 금 | [8,800] | 포함 |
| 계 약 이 행 보 증 금 | [2,000] | 없음 |
| 합 계 | [10,800] | - |

4) 기타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점포 규모별로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별첨 2,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 26.4 m²기준)

| 구 분 | 지급대상 | 금 액 | 면적3.3㎡당 금액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비고 |
|-------|--------|-------------------------------------------------------------|------------|----------|------|-------------------|
| 합 | 계 | [50,380] | [6,297] | | | |
| 인테리어 | | [19,800] | [2,475] | 계약시 협의결정 | 협의결정 | 점포 내장공사 |
| 설비/집기 | ⊏F I L | [21,780] | [2,722] | 계약시 협의결정 | 협의결정 | [별첨 2] 참조 |
| 초도물품비 | 당사 | [3,300] | - | 계약시 협의결정 | 협의결정 | [별첨 3] 참조 |
| 간판 | | [5,500] | - | 계약시 협의결정 | 협의결정 | 외부 전면간판 |
| 도면 작 | 성비용 |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장설계 비용. 매장 실측 후 확정됨. | | | | |
| 감리 | 비 | 3.3 m² 당 [330](삼십삼만원) , 가맹희망자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만 부과 | |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초도물품비는 가맹점별 점포 규모가 상이하므로 점포 상황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철거, 전기승압, 외부공사, 냉·난방 설비,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주체 | 선정기준 |
|--------|------------------------------------------------------------------------------------------------------------------------|
| | 1)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 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
| 기장암사업자 | 3)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 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
| | 4)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 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 지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피고용인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교육 기준 | 계약・채용 기준 |
|--------|-------------------------|-----------------------------------------------------|
|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
| 종업원 | 근면·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소지한 사람 | 만 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핵커피』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

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차액가맹금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금액 (단위: 7 | 전원, 부가세 포함) | 지급대상 | 지급기한 | 반환조건 | 반환될 수 없는 사유 |
|-------------------------|-----------------------------|-------------------------|------|----------------------------------------------------------------------------|-------------------------------------|----------------------------------------------------------------|
| 특별, 보수 교육비 | (3 | 일당 [330] 33만원) | |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 본사의 노하우를 제 공하는 것이므로 교 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
| 판촉비 | 사부담, 제 ^조 업자부담 | 시 기획비용은 본 | |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 일 이내 | 가맹본부의 귀 책사유로 판촉 활동이 취소된 경우 | 판촉활동 실시 후 반 환 되지 않음 |
| 점포환경개 선비용 | 가맹본부 년 제외한 나더 | |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 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 선 시 비용지 원 내역 참조 | 환경개선 공사 전 계약이 종 료된 경우 | 환경개선 공사 이후 반환되지 않음 |
| 로열티 | 매월 [220](이십이만원) | | 당사 | 익월 5일 이내 | 가맹본부의 귀 책사유로 계약 이 종료된 경 우 | 가맹점이 영업지도 및 관리를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 는 소멸성 대가 |
| 지연이자 | 연 15% | | | 연체일 익일부 터 지급하는 날까지 | 가맹본부의 귀 책사유로 계약 이 해지된 경 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물품 대금,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 환되지 않음 |
| 세무사 비용 | | 세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금액 | | 정산금액에서 정산함 | 가맹본부의 귀 책사유로 계약 이 해지된 경우 | 세무사 용역이 수행 된 후 반환되지 않음 |
| 부가세 | 특수상권에 입점한 경우에만 | 매월 매출대비 발생하는 금액 | | 정산금액에서 정산함 | 가맹본부의 귀 책사유로 계약 이 해지된 경우 | 부가세 납부 후 반환 되지 않음 |
| 점포운영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 부담함 | 청구되는 금액 | | 정산금액에서 정산함 | 가맹본부의 귀 책사유로 계약 이 해지된 경우 | 해당 공과금 납부 후 반환되지 않음 |

▶상기 비용 중 세무사 비용, 부가세, 점포운영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특수상권에 입점 한 가맹점사업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 ▶전국단위 판촉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간 분담 비율은 본인에게 제공되는 판촉물 부수 내지 개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 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 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2023년 기준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구분(기준 : 2023년) | 내 용 |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 |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핵커피』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예정일 2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 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에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거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종료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당사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핵커피』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혐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핵커피』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개점 전 교육비 전액,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 구 분 | 금 액 (단위 : 천원) | 부가세 |
|-----------|----------------------|-----|
| 최 초 가 맹 금 | [8,800] | 포함 |

| 계 약 이 행 보 증 금 | [2,000] | 없음 |
|---------------|----------|----|
| 합 계 | [10,800] | -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핵커피』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종료 시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간판·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규칙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영업 종료 15일 전까지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 및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각종 유형/무형의 물품 목록을 작성하여 당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무형의 물품에는 전산장치에 저장된 자료도 포함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핵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 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구 분 | 품 목 | 규격 | 거래형태 | 거래상대방 |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
|---------|------|----|------------------|-------|------------|
| 부동산 | 해당없음 | - | - | - | X |
| 설비 / 집기 | | | [별첨 2] 참조 | | |

귀하가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순 번 | 프 모(다이) | 공급 | 가격 | 구분 | | |
|----------------------------|---------|----|----|----|--|--|
| 표 건 | 품 목(단위) | 상한 | 하한 | 丁世 | | |
| 당사가 공급한 품목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 | |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핵커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핵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 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핵커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제한 내용 및 조건 | 위반 시 책임 |
|------------------|----------------------------------------|-------------------------------------------------------------------|
| [별첨 4] 참조 |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이상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는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라 별도로 상품용역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 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위: 원) | 가격 통보 방법 | 비고 |
|----------|-------------|------------|-------------|
| [별첨 4 | 1] 참조 | POS를 통한 게시 | 2024년 4월 기준 |

▶귀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의해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 와 합의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업종 범위 |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 |
|----------------|-------------|---------|
| 중설인 법중 립제 - | 가맹본부 | 계열회사 |
| 커피 전문점 | 핵커피 | 해당사항 없음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 설정방법 | | |
|------|----------------------------------------------------|--------------------------|------------------|
| 일반상권 | 특수상권을 제외한 지역 | 점포기준 반경 300미터 | 계약서에 지도표시 |
| 특수상권 | 백화점, 대형 할인마트, 대형 쇼핑센터, 복합건물 식당가, 지하철(기차)역, 대형병원 | 점포가 속해 있는 특수상권 내로 한정함 | 계약서에 특수상권명 기재 |

- ▶영업지역 내에 특수상권이 있을 경우 특수상권은 영업지역에서 제외함.
- ▶영업지역에 대한 개별약정이 있을 경우 개별약정을 우선 적용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 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
|---------------------------------|--------------|---------------|
|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 재조정 사유 발생 →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 |
|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당사 담당팀 검토 → | 면으로 통지하고 30일 |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 | 영업지역 변경(안) 작 |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 는 경우 | 성 → 가맹점사업자 |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 에게 서면 통지 →가 |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 |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명업지역 변경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고객 모집을 하기위한 판촉·홍보활동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핵커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
| 연도 |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 |
| | 가맹점 | 기타 오프라인 | 자사 온라인몰 | 기타 온라인 |
| 2023년 | 100 | 0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 연도 |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
|-------|--------------|-------------|
| 2023년 | 100 |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핵커피』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 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 서 | 기 간 (계약만료일 : D-day) |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 D-180 ~ D-90 |
|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 D-180 ~ D-90 |
|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 D-180 ~ D-90 |
|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 ①+15일 이내 |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 |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 |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예→B, 아니오→® | D-180 ~ D-90 |
|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 D-60일 이전 |
|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 D-day |
|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 D-day |
|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 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 |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내용(관련 계약조문 : 제9조 제2항)

-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관련 계약조문 : 제40조 제1항)

-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본사의 서면 동의 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 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자신의 직원에 대하여 노동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 등을 본사의 승인 없이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거 나 본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물품 등의 대금의 결제를 2회 이상 지연한 경우
-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 가맹계약서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상 규정된 교육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감독, 통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상의 설비 및 기기 등에 대한 점검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 가맹계약서상 복장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 본사의 사업에 손상을 끼칠 수 있는 단독광고 및/또는 단독판촉활동을 하는 경우

-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특단의 사정이 없이 본사가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에 참여하지 아니하고도 교육 종료 후 30일 내에 본사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정해진 기일 내에 가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납부할 각종 비용이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년 안에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본사의 서면승인 없이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
-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당사가 귀하에게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관련 계약조문 : 제40조 제2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 거나 법원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약서 내용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임의적으로 가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게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당사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의 변경사항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가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가능 조건 | 양도 절차 | 비고 |
|-----------|----------------------------------------------------------------------------------------------------------------------|----|
| 정한 가맹점 운영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 승계를 인정하여 잔여기간에 대해 가맹점 운영권이 승계 됩니다. 또한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 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 | | 모든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영업의 자격에 관해 서는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 능, 상속인에 대해서는 개점 전 교육비를 제외한 가맹금 면제 |
|----------|------------|--------------------------|----------------------------------------------------------------|-----------------------------------------------------------------------------------------------|
| 대리 행사 | 본부 승인 시 가능 |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대리행사 가능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 리행사 가능 | 대리자 교육비 부담 |
| 업무 위탁 | |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업무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업무위탁 가능 여부 통지 → 업무위탁 가능 | 업무 위탁자 교육비 부담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에서 귀하가 『핵커피』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업금지 되는 업종 | 경업허가 절차 | 비고 |
|------------|--------------------------------------------------------------------------|----------------------|
| 커피 전문점 |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문의 : 02-2038-8444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핵커피』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하고 당사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개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 록 하여야 합니다.

| 영업시간 | 영업일수 | 비고 |
|----------------|-------------|-------------------|
| 10:00~22:00 이상 | 26일/월 이상 영업 | 문의 : 02-2038-8444 |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장 종업원 수 | 직접 근무 여부 | 대체 가능 인력 | 비고 |
|----------|----------|------------|----|
| 제한없음 | 직접 근무 | 영업이 가능한 인원 |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핵커피』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 | 분담절차 | | |
|-------|---------------------------------|------------------------------------------------|------------------------------------|------------------------------------------------------------------------------------------------------------------------|---------------------------------------------------------------------------------------------|--|
| 가맹점모집 | | 모집광고 | 100% - | | - | |
| | 개별광고 | | - | 100% |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 |
| 광고 | 전국 및 지역별 광고 | 브랜드 광고 브랜드 광고 + 가맹점 모집광 고 |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사전약정서 체결 또는 | | < 광고> 광고 실시 전 계획안 공지→가맹점사업자 50% 이상 동의→가맹점의 행사 참여 <판촉> 판촉행사 실시 전 계획안 공지 (1)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 | |
| 판촉 | 동의절차 시 분담비율 전국 및 지역별판촉 | | | 시→ 전체 가맹점의 행사 참여 (2) 가맹점사업자 70% 미만 동의 시→ 동의한 가맹점만 행사 참여 *다만, 별도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광고 및 판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 | ㅏ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 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으며,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 (₩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삼천만원 (*3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계약종료 후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

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 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종료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폐점하였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금으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인 폐점 요청을 포함하여 그 외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소요기간 | 소요비용 |
|-------------------|---------------------------------------------------------|-----------|--------------------|
| 합계 합계 | - | 60일 내외 | |
| 가맹희망자 문의 |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D-60 | |
| 사업 설명・상담 |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D-59 | |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 D-52 | |
| 최종 협의 | - 개설 승인 | D-45 | IV.가맹점사업자의 |
| 가맹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 D-44 |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
| 가맹금 예치 | - 최초가맹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예 치 기관에 예치 | D-44 | 부담 참조 |
| 종업원 구인 | - 가맹점사업자 부담 구인광고 | D-44 | |
| 실내외 공사착수 |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D-43 | |
| 교육 실시 | - 출ㆍ퇴근 집체교육 | D-38 | |
| 인테리어 공사 | - 공사 실시 | D-37 | |
| 지역홍보 | - 지역판촉 행사 실시 | D-15~개점전날 | |
| 점포 개설 |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 D-day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 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가맹계약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석 또는 본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관련 법규를 유추 해석하여 적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상기 방법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거나 중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 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 점포환경 개선 | 가맹본부 부담 | 가맹본부 부담 | 지급절차 | 비용부담 제외 |
|-------------------------------------------------------------------------------------------------------|------------------------------------------------------------------------------------|------------------------------------------------------|------------------------------------------------------|----------------------------------------------------------------------------------|
| 사유 | 비용 항목 | 비용 비율 | | 사유 |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경우 -위생이나 아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지장을 주는 경우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교체비용을 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통일성과 무관하게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 | 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 |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위하여 경영지도 요원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대상 및 내용 | 절 차 | 비용부담 | 비고 |
|--------------------|----------------------------------------------------------------------------|-----------------------------------------------------------------------------------------------------------------------|-----------|----------------------|
| 가맹본부 요청 시 |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 가맹본부 | 문의 : |
|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매제사업자에게 제시 . 경역자도 ㅎ 가매 | 가맹점 부담 | 문의 : 02-2038-8444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핵커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핵커피』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주요내용 | 교육방식 | 기 한 | 비고 |
|------|----------------------------------------------------|--------------|------------------------------------------|------|
| • | 점포 운영 시스템 교육 상품 조리 교육 | |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 |
| 특별교육 | 신메뉴 출시에 따른 조리 교육 또는 서비스 품 질 강화 등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 | 출·퇴근 집체교육 | 필요 시 | 필수교육 |
| 보수교육 | 상품 조리 교육, 점포 운영, 신메뉴 교육, 가맹점 운영 전략 교육 등 | |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정기, 비정기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 |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핵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 구 분 | 최소시간 | 비용 | 비고 |
|---------|---------------|-------------|------------------------------------------|
| 개점 전 교육 | 교육 3일 [3,300] | | 최초 계약 시 이수 |
| 특별교육 | 개별 산정 | 교육1일당 [330]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 ид по | 개별 산정 | 교육1일당 [330] | 가맹점사업자가 개점 전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
| 보수교육 | 개별 산정 | 실비 | 개점 전 교육 시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내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연번 | 지역 | 명칭 | 소재지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 비고 |
|---------------------|------|
| 해당사 | 항 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비고 |
|----------------------|------|
| 해당사: | 항 없음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02-2038-844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 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가맹본부의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설비, 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3. 판매상품 리스트]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 | 권장가격(단위 : 천원) | |
|---------------------|--------|---------------|-------------|
| 1L Size Hack Series | (ONLY | ′ ICED) | |
| 핵 커피 | 4 | | |
| 핵 허니라떼 | 4 | .8 | |
| 핵 홍초 에이드 | 4 | .8 | |
| 핵 복숭아 아이스티 | 4 | .8 | |
| Espresso Beverage | (HOT) | (ICED) | |
| 에스프레소 | 2.5 | 2.8 | |
| 아메리카노 | 2.5 | 2.8 | |
| 카페라떼 | 3.2 | 3.5 | |
| 아몬드 라떼 | 3.5 | 3.8 | |
| 꿀 라떼 | 3.5 | 3.8 | |
| 바닐라 라떼 | 3.5 | 3.8 | |
| 카푸치노 | 3.2 | 3.5 | 2024년 4일 기조 |
| 카페모카 | 3.5 | 3.8 | 2024년 4월 기준 |
| 카라멜마끼아또 | 3.7 | 4.0 | |
| 크림 아포가토 | - | 4.9 | |
| 생크림 추가 | 50 | 0원 | |
| 향시럽 추가 | 50 | 0원 | |
| Other Beverage | (HOT) | (ICED) | |
| 녹차라떼 | 3.4 | 3.7 | |
| 고구마라떼 | 3.2 | 3.5 | |
| 핫 초코 | 3.5 | 3.8 | |
| 민트 초코 | 3.8 | 4.1 | |
| 홍삼라떼 | 3.8 | 4.1 | |
| 미숫가루라떼 | 3.8 | 4.1 | |
| 꿀 우유 | 3.0 | 3.3 | |

| 상품 · 용역명 | 권장가격(단 | 권장가격(단위 : 천원) | |
|-------------|--------|---------------|-------------|
| Tea | (HOT) | (ICED) | |
| 얼 그레이 | 3.4 | 3.7 | |
| 캐모마일 | 3.4 | 3.7 | |
| 페퍼민트 | 3.7 | 3.7 | |
| 밀크 티 | 4.0 | 4.3 | |
| 복숭아 아이스티 | - | 4.0 | |
| 생 레몬아이스티 | - | 4.0 | |
| 자몽티 | 4.5 | - | |
| 레몬티 | 4.5 | - | |
| 오렌지티 | 4.5 | - | |
| 유자티 | 4.0 | - | |
| Frappe | (HOT) | (ICED) | |
| 모카프라페 | - | 4.8 | |
| 초코칩 프라페 | - | 4.8 | |
| 녹차 프라페 | - | 4.8 | 2024년 4월 기준 |
| 민트초코 프라페 | - | 4.8 | 2024년 4월 기군 |
| 밀크 쉐이크 | - | 4.8 | |
| Smoothie | (HOT) | (ICED) | |
| 딸기 요거트 | - | 4.8 | |
| 블루베리 요거트 | - | 4.8 | |
| 플레인 요거트 | - | 4.8 | |
| 복숭아 요거트 | - | 4.8 | |
| Ade | (HOT) | (ICED) | |
| 리얼 자몽 에이드 | - | 4.8 | |
| 리얼 블루레몬 에이드 | - | 4.8 | |
| 리얼 오렌지 에이드 | - | 4.8 | |
| 라임청포도 에이드 | - | 4.8 | |
| Bakery | (1EA) | (1BOX) | |
| 강릉 커피빵 | 1.2 | 12.0 | |
| 풍년 수제 초코파이 | 2.5 | 25.0 | |

지점장

(앞 쪽)

| | 가맹금예치신청서 | | 처리기긴 | <u>}</u> | | | |
|-----------|-------------|----------|----------|----------|------|----------|------|
| | | 가병금에서 | 기정료에서선정시 | | | | |
| | 상호(가맹점)명 | | | |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 | | | | |
| | 주소(사무소) | | | | | (전화: |) |
| 가맹 | 상호명(영업표지) | | | | | | |
| 기 8 본부 | 성명(대표자) | | | | | | |
| 七十 | 주소(사무소) | | | | | (전화: |) |
| 예치가맹 | 금 | ₩ (금 | | | 원 정) | | |
| 신청인의 | 계좌 | | | | | | |
| 가맹본부 | -의 계좌 | | | | | | |
| 「가맹 | 사업거래의 공정화 | 에 관한 법률 | 제6조의 | 5제1항, 같 | 은 법 | 시행령 제5조의 | 7제2항 |
| 에 따라 | · 위와 같이 가맹금 | 을 예치하여 줄 | 줄 것을 신기 | 청합니다. | | | |
| | | | | | | | |
| | | 년 | 월 | 일 | | | |
| | | 신 | 청인: | | | (서명 또 | 는 인) |
| 예치 | 기관의 장 | | | 귀하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뒤 쪽)

예치기관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본 가맹금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의 예치일 부터 7일 이내에 이 증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금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맹금 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 구분 | 매장명 | 소재지 | 연락처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별첨 6.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정보궁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 | | | | | | | |
|-------------------------------|---------------------------------------------------------|-------------------------------------------------|------|---|-------------|-----------------------------|--|--|--|
| ☑가맹본부 | ☑ 가맹본부 보관용 | | | | □ 가맹희망자 보관용 | | | | |
| 가 맹 거 래 사 자 문 약 | 밀 | 202 년 | 월 일 | | | 가 가맹희망자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만 | | | |
| 가 맹 거 래 사 확 인 | 성 | 명: | (인 |) | 왼쪽 | | | | |
| 가맹희망자(아래는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 | | | | | | | | |
| 가 맹 계 약 서 제 공 | - 일 | | | | 맹계약서를 제공 | | | | |
| 인 근 가 맹 점 현 황 문 서 제 | 공 일 | 202 년 월 일에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희망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 성 명 | (서 | 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 | | |
| 주 소 | | | | | | | | | |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입 | 길시 | | 년 울 | 릴 | 일 시 | 분 | | | |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7 | · · · · · · · · · · · · · · · · · · · | ex)본사 사무실, 본점 등 | | | | | | | |
| 0-0 11 12 11012 1 | | | | | | | | | |
|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기 | .F.신. | ex)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 | | | | | | |
| 0 보이게시크 세 0 E E 7 | 12 | | | | | | | | |
| | | 가맹 | 본부 | | | | | | |
| 상 호 ㈜핵가족 | 보 호 ㈜핵가족 대표자 양동모 (서명 또는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확인서 | | | | | | | |
|-------------------------------|---------------|-------------------------------------------------|----------------|-------------|----------------------------|----------------------------|--|
| | □ 가맹본부 보관용 | | | ☑ 가맹희망자 보관용 | | | |
| 가 맹 거 | 래 사 자 문 일 | 202 년 | 월 일 | | | · 가맹희망자에게 ·문을 할 경우에만 | |
| 가 맹 기 | 서 래 사 확 인 | 성명: | (인 |) | | 에 기재함. | |
| | 가맹희망지 | ㅏ(아래는 가맹희 당 | 망자가 자필로 | . 작성 | 하여야 함) | | |
| 가 맹 계 | 약 서 제 공 일 | | | | 맹계약서를 제공 ⁽ (| | |
| 인 근 가 맹 점 | 현 황 문 서 제 공 일 | 202 년 월 일에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희망자 :(서명 또는 인) | | | | |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 |
| 주 소 | | | | | | | |
| 정보공개서 | 를 제공받은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 | | 분 | |
| T 7 78.11 | 3 NO 1 | ex)본사 사무실, 본점 등 | | | | | |
| 성모공개서 | 를 제공받은 장소 | | | | | | |
| | | ex)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 | | | | | |
| 정모공개석 | 를 제공받은 사실 | | | | | | |
| | | 가당 | 맹본부 | | | | |
| 상 호 ㈜핵가족 대표자 양동모 (서명 및 | | | | | (서명 또는 인) | | |